

【붙임1】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5 - 호

『 2015 농림어업총조사 』 조사원 모집공고

통계법 제17조제1항 및 농림어업총조사 규칙(기획재정부령 제174호)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구 통계 조사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.

2015. 11. 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1.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

- 모집예정인원(명) : 조사원 1명
-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

구 분	계 약 기 간	계약금액(원)	비 고
조사원 (14일)	- 교육 : 11. 25. ~ 11. 26. (2일) - 준비조사 : 11. 30. (1일) - 본조사 : 12. 1. ~ 12. 15. (기간 중 11일)	681,940	도급계약 (상해보험 의무 가입)

※ 업무보조원은 채용신청서 접수자 중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 등 감안하여 별도 채용

※ 업무량에 따라 계약기간, 계약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

2. 응시 자격요건

- 자격 :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,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
 - 2015 인구주택총조사 등 총조사 경력자 및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우대 선발
 -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
 - 장애인,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육가구 우대 채용(관련서류 제출자)
- ※ 채용 제외자
 - 다른 직업이 있는자
 - 과거 통계조사 시 중도포기자 및 불성실하게 조사업무에 임한 자

3. 신청방법 및 심사일정

○ 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5. 11. 23.(월) 09:00~18:00 (1일간)
- 접수방법 : 서대문구청 3층 정책기획담당관 직접 방문접수

○ 구비서류

- 조사요원 채용신청서 (구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구청 교부)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- 건강보험증 사본1부
- 기타 증빙서류(해당자)

○ 심사 방법(서류 및 면접심사)

- 서류접수 시 면접 병행

○ 채용자 발표 : 2015. 11. 24.(화) 17:00 이후 개별통보

○ 기타 문의 : 서대문구청 정책기획담당관실 담당자 변민정(전화 02-330-1099)

붙임 1. 조사요원 채용신청서 1부.

2.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. 끝.

【붙임2】


2015 농림어업총조사

조사요원 채용신청서

사 진 (3cm x 4cm)	성 명 (한글)			성 별	
				생년월일	
	연락처	주 소			
		휴대폰			
지원 읍면동	()시군구 ()읍면동				
최 종 학 력	<input type="radio"/> 초등학교 <input type="radio"/> 중학교 <input type="radio"/> 고등학생 <input type="radio"/> 대학교 <input type="radio"/> 대학원 <input type="radio"/> 안받았음				
직 업	<input type="radio"/> 가정주부 <input type="radio"/> 통·리·반장 <input type="radio"/> 대학생 <input type="radio"/> 부녀회원 <input type="radio"/> 퇴직공무원 <input type="radio"/> 무직 <input type="radio"/> 기타()				
통계조사경험	<input type="radio"/> 2010 농림어업총조사 참여 유무 (유, 무) <input type="radio"/> 2014 가구주택기초조사 참여 유무 (유, 무) <input type="radio"/> 2015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유무 (유, 무) <input type="radio"/> 2010년 이후 기타 통계조사 참여 횟수 ()회				
건 강 보 험 (정확히 기입)	<input type="radio"/> 지역가입자 <input type="radio"/> 직장가입자 <input type="radio"/> 피부양자 (직장보험가입자는 상실신고 이후 지원 가능)				
상해보험 가입 여부	<input type="radio"/> 가입 <input type="radio"/> 미가입 (※조사원 의무가입 사항임)				
전 산 자 격 증	<input type="radio"/> 컴퓨터활용능력(유,무) <input type="radio"/> 워드프로세서(유,무) <input type="radio"/> 해당없음				
컴퓨터 활용	<input type="radio"/> 상 <input type="radio"/> 중 <input type="radio"/> 하				
조사시 이용교통수단	<input type="radio"/> 자동차 <input type="radio"/> 자전거 <input type="radio"/> 도보 <input type="radio"/> 기타()				
지원 동기	<input type="radio"/> 경제적 이유 <input type="radio"/> 여가활용 <input type="radio"/> 사회활동 참여 <input type="radio"/> 주위 권유 <input type="radio"/> 기타				
기타 (우대)	장애인	<input type="radio"/> 대상 <input type="radio"/> 비대상			
	저소득층	<input type="radio"/> 대상 <input type="radio"/> 비대상			
	다자녀보육	<input type="radio"/> 대상 <input type="radio"/> 비대상 (※ 3자녀 이상 보육 여부)			

- ※ 조사요원 채용신청서 작성 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세요.(허위 작성 시 미채용)
- ※ 조사원의 경우 상해보험 미가입자는 계약서 작성 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채용함
- ※ 온라인 접수 시 채용신청서 각 항목의 해당되는 곳에 ●로 표시

위와 같이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으로 신청합니다.

2015. . .

신 청 자 :

서명(인)

서대문구청장 귀하

【붙임4】



조사요원 근로계약서

201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요원(□총관리자, □조사관리자, □업무보조원, □내검요원)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권자인 서대문구청장을 “사용자”라 칭하고 피고용자를 “근로자”로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2015 농림어업총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“사용자”와 “근로자”의 고용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제2조(업무내용) “근로자”는 2015 농림어업총조사 업무 중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.

총관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총조사 관련 읍면동 업무 지원 총괄○ 시군구 및 읍면동간의 업무연락체계 유지○ 조사원 교육, 조사용품 관리, 업무량 배정 등 조사 준비○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관리○ e-Census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업무 추진 등
조사관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담당 조사원의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 등○ 조사표 작성 내용 검토 및 보완○ 불응가구 설득 지원○ 조사원별 조사 진도 파악 및 관리○ e-Census 통합관리시스템 및 인터넷조사 지원
업무보조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담당공무원 및 총관리자 업무 보조○ 총조사 및 상황실 업무 지원○ e-Census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○ 지역조사표 작성 지원
내검요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조사표 기입·내검 요령서에 따라 조사표 및 가구명부 내검○ 조사표류 편철 및 제출 준비

제3조(채용기간) “근로자”의 채용기간은 201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기간 중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.

구 분	업무보조원	
	구	상황실
□ 채용 일수	19	18
· 교육	3	3
· 조사준비	2	1
· 준비조사	1	1
· 본조사	11	11
· 읍면동 내검	2	2

※ 채용일수에는 유급 휴일수당, 휴일근무가산 수당은 해당 일수에 미포함.

제4조(산재보험 가입) “사용자”는 “근로자”를 채용함에 있어 채용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 이 때 보험료는 “사용자”가 납부한다.

제5조(보수 지급)

- ① “근로자”의 1일 보수는 총관리자 51,030원, 조사관리자 51,030원, 업무보조원 46,550원, 내검요원 46,550원으로 하고, 이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보수를 지급한다.(세금 공제 전)
- ② 보수지급 방법은 조사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근로시간 및 휴일수당) 근로시간은 09:00~18:00으로 한다. 또한 “사용자”는 “근로자”에게 “근로자”가 1주일간 개근한 경우에 대하여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며, 휴일근로에 대하여 1일 보수의 50%를 휴일수당으로 가산 지급한다.

제7조(중도포기자의 보수 지급) “근로자”가 채용기간 중 조사업무를 중도 포기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며, 유급휴일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
제8조(의무 및 변상책임)

- ① “근로자”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(벌칙)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.
- ② “근로자”는 채용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“사용자”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“사용자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 하여야 한다.
- ③ 복수취업 사실이 발견된 자는 향후 3년간 통계청이 주관하는 조사에 채용을 제한한다.

제9조(계약해지) “근로자”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“사용자”는 “근로자”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0조(용어해석)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“사용자”와 “근로자”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“사용자”의 해석에 따른다.

2015 . . .

(사용자) 채용권자 : 서대문구청장

문 석 진 ①

(근로자) 피고용자(총관리자, 조사관리자, 업무보조원, 내검요원)

성 명 : 서명 (인)
생년월일 :
주 소 :

【붙임5】

 2015 농림어업총조사

조사원 도급 계약서

201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 기관인 서대문구청장을 “도급인”이라 칭하고 계약 상대자를 “수급인”이라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계약은 2015 농림어업총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“도급인”과 “수급인”이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제2조 (업무내용) “수급인”은 2015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.

- 담당 조사구 경계확인, 거처 변동사항 수정
- 조사구역도 및 가구명부 보완 등 준비조사 관련 업무
- 조사안내문 배부 및 인터넷조사 안내
- 담당 조사구내의 가구방문 및 조사표 작성
-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정리·제출 등

제3조 (계약기간)

① “수급인”의 계약기간은 201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기간 중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.

- 교육 : 2일 (2015. 11. 23.~11. 24.)
- 준비조사 : 1일 (2015. 11. 30.)
- 본조사(가구방문조사) : 11일 (2015. 12. 1.~12. 15.기간 중)
(단, 본조사 기간은 15일이나, 조사업무량 감안 11일 계약)

- ② “수급인”은 도급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“도급인”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업무진도 파악, 전달사항, 조사표 검토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3회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“수급인”을 소집할 수 있으며, “수급인”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제4조(보험 가입) “수급인”은 “도급인”과 도급 계약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**개인별 상해보험을 자기 부담으로 의무적으로 가입**하여야 한다. (단,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하나, 미가입자는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계약이 이루어짐)

제5조 (도급금액)

- ① “도급인”과 “수급인”은 계약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수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한 도급 계약으로, 도급 금액 이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단,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도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“수급인”의 도급금액은 제2조의 “도급인”이 지정한 조사업무를 기간 내에 완료하였을 경우 세금공제 전 **681,940원**을 지급한다.
 - 교육참석 : 2일(**97,420원**)
 - 준비조사 수행 : 1일(**48,710원**)
 - 본조사(가구 방문조사) 수행 : 11일(**535,810원**)을 합한 금액이다.
- ③ “수급인”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조사표 및 각종 관련 서류를 “도급인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“도급인”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인정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“수급인”에게 지급한다.
- ④ 지급방법은 조사가 완료된 후 “도급인”이 “수급인”의 조사한 조사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분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부실·허위조사에 대한 감액지급) “수급인”이 고의 또는 허위로 조사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중 20%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. (조사표 내용검토 기간 중 확인)

제7조(중도포기자의 도급금액) “수급인”이 채용기간 중 조사업무를 중도 포기한 경우 도급금액을 다음 기준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.

- ① 교육 종료 후 또는 준비조사 수행 중 조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.
- ② 준비조사 완료 후 중도 포기한 경우는 교육 및 준비조사 도급금액의 70%만 지급한다.
- ③ 본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조사 완료된 실적에 따라 교육 및 준비조사 도급금액의 70%와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본조사 도급금액의 70%를 지급한다.
- ④ 중도 포기 발생으로 인하여 인수를 받아 조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총 도급금액 중 중도포기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도급금액을 지급한다.

제8조(업무량 배정 원칙) “수급인”은 “도급인”으로부터 업무량을 배정받아 조사기간 중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제9조(의무 및 변상책임)

- ① “수급인”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(벌칙)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.
- ② “수급인”은 채용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“도급인”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“도급인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.

【붙임6】

 2015 농림어업총조사

조 사 요 원 서 약 서

성 명 :

생 년 월 일 :

주 소 :

상기 본인은 201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도중 포기하지 않고,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통계법 제33조(비밀의 보호) 및 제34조(통계종사자 등의 의무)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.

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39조(벌칙)의 규정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서대문구청장 귀 하

서 약 자

서명 (인)

【붙임7】

 2015 농림어업총조사

중도포기 확인서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주 소 :

상기 본인은 201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사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도포기 하였음을 확인함. [해당란에 체크표시(√)]

- 아 래 -

교육 완료 후 중도포기

준비조사 완료 후 중도포기

본조사(가구방문조사) 기간에 중도포기

(조사원인 경우 조사대상 () 가구 중 () 가구의 조사표 작성을 완료하고 중도 포기함.)

2015년 월 일

중도포기자 : 서명(인)

확 인 자 : 서명(인)